

건설 현장 산업 안전 - 그 현안과 대응 방안의 모색

심 규 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gbshim@cerik.re.kr

근본적 대응 필요

2010년도 건설산업 재해자는 2만 2,504명, 사망자는 611명, 재해율은 0.70%이다. 그로 인한 건설산업의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5조 5,142억 6,000만원에 달한다. 5조 5,000억원이라는 규모는 서울시 1년 예산의 약 1/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특

히, 소규모 현장에서의 산재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듯 건설 산재로 인한 근로자와 건설업체의 피해, 그리고 이를 포함한 경제 손실 규모는 막대하지만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대개 고정된 사업장과 근속하는 근로자

를 중심으로 편제된 산업 안전의 체계 및 일시적 사업장과 이동하는 건설 근로자가 존재하는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

산업 차원의 접근 필요

무릇 제도 시행의 기본 단위는 동질성에 기초한다. 근속하는 근로자로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및 재해자 구성비(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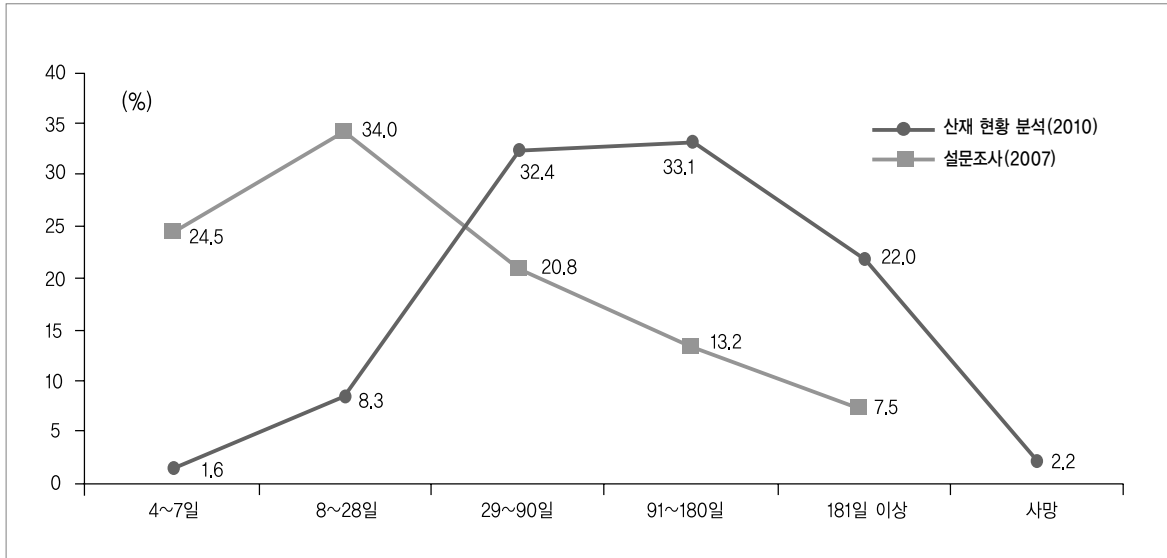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인, %)

구분	총계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 수	221,617	150,611	29,315	25,548	6,131	4,788	3,727	789	484	224
근로자 수 (구성비)	3,200,645 100.0	222,303 6.9	192,736 6.0	418,303 13.1	232,170 7.3	329,434 10.3	615,719 19.2	301,532 9.4	342,495 10.7	545,953 17.1
재해자 수 (구성비)	22,504 100.0	7,998 68.0	4,151 13.2	4,975 11.5	1,716 2.8	1,584 2.2	1,328 1.7	347 0.4	231 0.2	174 0.1
재해율	0.7	3.6	2.15	1.19	0.74	0.48	0.22	0.12	0.07	0.03

자료 : 고용노동부, 2010년도 산업재해현황 분석 연보, 2011.

■ 이 슈 진 단

재해 정도별(치료 예상 기간별) 재해자 분포 : 고용부 자료 및 설문조사 결과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분석 2010, 2011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조사, 2007. 9.

구성된 경우 특정 기업 또는 고정된 사업장이 근로자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다. 근로자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용·복지·산업 안전 등의 제도는 특정 기업 및 고정된 사업장을 기본 단위로 삼아 편제되고 큰 문제없이 작동된다.

하지만 동질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제도는 현장과 괴리되어 걸들게 된다. 건설 현장의 경우 비정규직인 기능 인력은 공중에 따라 직종에 따라 계속 바뀐다. 즉, 특정 현장에서의 동질성이 유지될 수 없다. 규모가 작은 현장일수록 교육

을 담당할 인원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부족하고 사람은 더욱 자주 바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능력과 보호구나 안전 교육, 건강 진단 등을 공급할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개별 현장에 두고 있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2010년 산재 관련 통계에 의하면 5인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6.9%인 데 비해 재해자의 비중은 그 10배인 68.0%를 차지하고 있다. 재해율도 전체 평균인 0.7%보다 5배가 높은 3.6%다.

비정규직인 기능 인력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기본 단위는 이들의 이동 범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대체로 건설 기능 인력은 현장을 옮겨 다니며 어디든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 따라서, 건설 현장을 포괄할 수 있는 건설산업 자체가 동질성이 유지되는 기본 단위가.

건설산업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공통적인 기초 안전 보건 교육, 정기 건강 진단, 3대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에 대해 근로 일수에 따라 주기적으로 산업 차원에서 공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환산 재해율 대상에서 경미한 재해 제외

산재에 대한 공상 처리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약화와 추가적인 비용 소요에 따른 부실 시공의 우려가 가중된다. 그 외에도 산재 보고 의무 제도를 준수한 건설업체가 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도적인 불합리가 존재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07. 9)에 나타난 산재 경험자 중 치료 기간이 4~7일이라는 응답은 24.5%, 8~28일이라는 응답은 34.0%이다. 하지만 보고된 산재 중 동일한 치료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와 8.6%에 불과하다. 즉, 1주 이하 또는 4주 이하의 산재는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산재로 보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상 처리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의 경각심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공상 처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치료 기간의 조작도 어려운 '4~7일'의 산재를 PQ 재해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직업병 재해, 근로 기간 고려한 비례적 반영 필요

대체로 발병에 이르기까지 잠복 기

간이 긴 직업병 등에 대해서도 산재가 발생한 최종 사업장에 해당 건수를 귀속시키고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업체의 산업 안전 성과와 책임 범위의 인과 관계가 모호해지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이것이 산업 안전 제도 전체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잠복 기간이 긴 직업병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 기간에 따른 재해 건수 경감 조치(귀속재해 건수=해당 건설업체 근로 기간 ÷ 해당 직업병의 잠복 기간)가 필요하다.

적정 공사비 및 산안비 확보 필요

저가 낙찰에 따른 공사비의 부족은 산재 다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사비 부족 ⇒ 무리한 공기 단축 ⇒ 노동 강도 강화 ⇒ 산재 다발'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가낙찰제에서 낙찰률은 70%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 때 공사비는 물론 산안비도 함께 하락하여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어렵게 한다.

정부의 수요 독점력과 입찰자의 제살 깎기 경쟁에도 불구하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산안비를 낙찰률과 무관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

는데 그 예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확보 및 사후정산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당사자별 산재 예방 노력 촉진

건설 현장에는 발주자, 원수급자, 하수급자, 근로자 등 산업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당사자들이 존재하므로 이들의 역할이 결합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건설업이 차지하는 산재 비중에 상응하는 예산과 인력을 건설업에 배정하고, 건설 현장 및 건설 근로자의 특성을 산업 안전 관련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발주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산업 안전 요소를 고려(특히, 가설재 관련)해야 한다. 원수급자와 관련해 산재 예방 활동의 핵심인 산업 안전 관리자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근속을 유도하고 그 노력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하수급자와 관련해 재해율 공표 및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직접 고용 주체로서의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

근로자의 산업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보호구 미착용 단속, 기초 산업 안전 보건 교육 및 건강 진단 참여 의무화 등을 실시해야 한다. CERIK